

14-파. 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: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공시시기】: 2024년 10월

【공시방법】: 간접입력(교육부)

【공시내용】: 2024년 대학 내 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

【공시양식】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4. 4. 1.)

(단위: 명)

기준 연도	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조직 현황				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시설 현황			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인력 현황							
	설치 여부 (O/X)	설치 유형 (①~⑤ 중 선택)	전담 인력 지정 여부 (O/X)	예산 (단위: 원)	상담·조사 독립 공간 유무 (O/X)	상담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(CCTV) 설치 유무 (O/X)	상담실 내 비상벨 설치 유무 (O/X)	성별 (단위: 명)		업무별 (단위: 명)			고용 형태별 (단위: 명)		
								남	여	성사안 피해 예방·대응	상담 및 조사 업무	기타 행정 업무	정규직 (무기 계약직 포함)	기간제 계약직	

성폭력·성희롱 사건 조사·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현황						성폭력·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규정 현황	
위원회 설치·운영		위원 구성 현황 (단위: 명)				규정 제정 여부 (O/X)	
		대학 내부		대학 외부			
설치 여부 (O/X)	성사안 전담여부 (O/X)	남	여	남	여		

14

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

■ 작성지침

【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조직 현황】: 인권센터를 포함, 학내 구성원(학생·교직원)과 관련한 성폭력·성희롱 피해 예방, 고충 상담, 사안 처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

* (기준) 학교법인 정관, 학교규칙 및 직제 규정 등에 명시된 조직 및 기구

【조직 현황-설치유형】: ① 인권센터 내에 설치, ② 일반 학생상담센터 내 설치, ③ 학내 행정기관 내에 설치, ④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, ⑤ 기타 중에서 하나만 선택

【조직 현황-전담인력 지정 여부】: 상담기구 내에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하는 자를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하는 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 여부를 'O/X'로 표시

【조직 현황-예산】: 회계연도 2024년 기준 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(인권센터 내의 성폭력·성희롱 관련 사업 등)에 배정된 예산으로, 인건비를 제외한 후 입력

【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시설 현황】: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,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현황

【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인력 현황】: 상담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현황(부서장 포함)

【인력 현황-업무별】: 전담업무별로 구분(성사안 피해 예방·대응, 상담 및 조사업무, 기타 행정업무로 분류)

※ 성고충상담·사안처리·예방교육 등 전담업무와 그 외의 업무(행정 및 각종 행사, 성인식 조사 등)를 함께

수행하는 경우 '기타 행정업무' 입력으로 구분

【인력 현황-고용 형태별】: '계약직'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'기간제 근로자' 및 '단시간 근로자'에 해당하며,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(무기계약직 포함)으로 분류

【성폭력·성희롱 사건 조사·심의 위원회 설치·운영 현황】: 학내 성폭력·성희롱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심의 등 조치를 위해 구성, 운영하는 위원회

【조사·심의 위원회-성사안 전담여부】: 대학 내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조사·심의 등 처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타 위원회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'O/X'로 표시

【조사·심의 위원회-위원 구성 현황】: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인 대학 내부로, 해당 학교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대학 외부로 구분

【성폭력·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규정 현황】: 학내 성폭력·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건처리에 근거가 되는 규정 제정 여부

■ 참고사항

- 성폭력·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은 교육부(〈대학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〉 사업을 통해 실시하는 실태조사)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교육부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